

제25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 월 10 일

여수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경 천 구



여수시 조례 제2288호

붙임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출된”을 “제출 또는 발의·제안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이 발의하는”을 “, 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출 또는 발의·제안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 중 “발의당시”를 “발의 당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조금·지방교부세”를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 시장의 의견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서식 제3호 중 “작성자 △△국 △△과장 ○○○”를 “작성자 △△국 △△과 ○○과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에 뒤쪽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재원조달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뒤 쪽)

작성요령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여수시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산출 및 가격기준, 비용추계 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과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나. 추계 결과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 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구분 제시한다.(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현 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 방안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비(도비 및 시비),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라. 재원조달의 상세내역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산출기초와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작성자

비용추계서의 작성자 또는 참여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 안 명 :

2. 재정수반요인

3. 미첨부 근거 규정

(「여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4.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1억원 미만 산출기초 작성(추계의 전제 등)

5. 작성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비용추계서”란 <u>제출된</u>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p> <p>2. 3. (생략)</p> <p>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u>발의하는</u>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① (생략) ② <u>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u>제출 또는 발의·제안하는</u> ----- ----- ----- -----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① ----- -----, <u>여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여수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제출 또는 발의·제안하는</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외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u></p>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 ⑤ (생략)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⑦ 비용추계서 서식은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 ①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생략)

③ 비용추계서는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발의당시-----.

⑦ ----- 별지 제1호서식----

제6조(재원조달) ① 시장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비용추계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의안의 경우 시장의 의견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